



할부금융 약정서

여신금융협회 약관신고일자 : 2025.06.13

대한민국정부  
인 지 세  
0,000 원  
남대문세무서장  
후납승인 2014년 15호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 귀중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은 이 할부금융 약정과 체결에 관하여 여신거래기본약관 및 주요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아래와 같이 자동차 할부금융 계약을 체결합니다.

«CSDate»

차량내역	차종 / 모델	«ACIMdl»/«ACIMdlName»	판매 가격	«InvPri» 원	선수금	«DwnPay» 원	추가 항목	원
매도인	판매사	«Dealer»	판매 직원	«SPName» 휴대폰 :	금융담당 직원	«FCName» 휴대폰 :		원

대출 및 상환조건	할부원금(①)	«NFAmt» 원	이자율(년)	«Intr» %	상환방식	원리금균등분할상환	
	할부이자(②)	원	유예금	«ResVal» 원	할부기간	«Terms» 개월	
	잔가보장약정	_«trv1»잔가보장약정포함(잔가보장약정이 포함되었을 경우, "잔가보장에 관한 약정서"상의 약관이 적용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만기 1년 이상 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중도상환원금 x1%(부대비용)+중도상환원금 x(중도상환수수료율-1%)x 잔존기간* / (대출기간-30) 으로합니다. *30 일미만상환시'대출사용시간을'30 일로 간주합니다.					
		만기 1년 미만 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중도상환원금 x(중도상환수수료율 1.90%)x 잔존기간* / (대출기간-30 일)으로 합니다. *30 일미만상환시'대출사용시간을'30 일로 간주합니다.					
		※무이자 상품일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는 위 수수료 규정과 상관없이 0%로 적용됩니다. ※만기 1년 이상 대출 시 중도상환수수료를 1% 미만인 되는 경우, 만기 1년 미만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 산식이 적용됩니다.					
	할부가격(①+②)	원	할부수수료의 실제 연간요율	%	지연배상금율 ("약정이자율+3%, 법정 최고금리 (24%)이내")	연 «ODIntr»%	
	월 납입액 (a+b)	«MPAmt» 원	월 할부금(a)	«MRPay» 원	월부가 서비스료(b)	원	
	보증조건	보증채무최고액	할부 원금의 100%	보증기간	할부기간과 동일	할부원금유예상환의 기간연장약정 채무자 검 본인의 신청시 최종납부일의 유예할부원금에 대한 추가할부 이용가능 (세부내역 계약종류시 확정)	
담보내역	_«r2»자동차근저당 «r1» 부동산근저당 _ «r1»예금 «r1»유가증권 «r1»기타( )						

서비스상품	상품명 1	금액 1	
	상품명 2	금액 2	
	상품명 3	금액 3	
	· 본 서비스 상품의 정비용역의 제공 책임은 쿠폰을 판매한 딜러가 제공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쿠폰본의 내용 중 "쿠폰사용방법" 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금융상품의 월납입액에는 본인의 결정에 따라 구매된 서비스상품의 할부가서비스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만약 중도상환, 중도해지 등의 사유로 본 계약이 만기 전 종료될 경우, 본인은 계약 기간의 종료일 현재 미납된 서비스 상품의 전액잔액을 납부하여 서비스 상품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총금액

연대보증인	※아래 기재사항은 보증인의 담보능력 파악, 계약내용 전달 등을 위해 취득하는 정보입니다.						
	연대보증인의 입보가 가능한 경우						
	차주가 개인사업자 일 때	<input type="checkbox"/>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상 공동대표					
	차주가 법인 일 때 (1인)	<input type="checkbox"/> 최대주주 <input type="checkbox"/> 특수관계인 포함 과점/대주주(30%)이상 <input type="checkbox"/> 대표이사 <input type="checkbox"/> 무한책임사원					
	기타	<input type="checkbox"/> 그 밖에 대출성 상품 계약의 목적·성격 및 대상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보증종류	특정근보증: 당해채무(기간연장 증액포함), 한정근보증: 특정+동일종류신규대출 <input type="checkbox"/> 특정근보증 <input type="checkbox"/> 한정근보증					
	연대보증인						
	성명	«GName»		생년월일	«GDOB»	신청인과의 관계	«RelBor»
	자택주소	«GAddr»			전화번호	«GMob»	
	직장(사업자)명	«GComp»	부서명	직위	재직(사업)기간	연소득/ 재산세	만원/ 만원
직장주소				직장전화번호			
보증채무최고액	«MaxGuranAmt» 원 (※보증채무최고액은 총 대출금액의 100%입니다.)			보증기간	«CorpTerms» 개월		
특이사항							

금융회사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주) 서울특별시 중구 한강대로 416, 10 층 (남대문로 5 가, 서울스퀘어빌딩) 대표이사 토마스 알렉산더 바거스하우저		특약 사항	(※공동채무계약의 경우, 분할비율 명기)
신청인(본인)	«CSDate» 신청인 (본인) : «BName»			(인)
채무자검 본인의 본인확인 및 자필서명을 확인함	판매직원	«SPName»	금융담당직원	«FCName»
계약관련 고지사항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거래 시, 상기 내용을 제공하여야 하며, 기재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문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된 정보제출을 거부하거나 검증이 충분히 되지 않을 경우에는 금융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FCampaignDescriptionS1»			





# 할부금융 약관

여신금융협회 사후보고 접수일자 : 2024.10.24

###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여신거래기본약관의 부속약관으로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 (이하 "금융회사"라함)와 자동차를 매수하면서 할부금융을 이용하는 자(이하 "채무자"라 함)간의 할부금융 계약에 있어서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제 2 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할부금융"이라 함은 금융회사가 매매계약에 대하여 매도인 및 채무자와 각각 약정을 체결하여 채무자에게 대출한 재화 및 용역의 구매자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채무자로부터 그 원리금을 나누어 상환받는 방식의 금융을 의미합니다.
2. "할부금융자금"이라 함은 금융회사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매도인에게 지급한 할부금융에 의한 대출금액을 의미합니다.
3. "할부금"이라 함은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상환하여야 할 할부금융에 의한 대출금액 및 이자액의 총 합계액을 의미합니다.

### 제 3 조 (약정서 필수 기재사항)

할부금융 약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기재합니다.

1. 매도인, 채무자 및 금융회사의 성명 및 주소
2. 대상물건의 세부내용 및 인도등의 시기
3. 이자율, 연체이자율, 중도상환수수료 등 채무자가 부담하는 각종 요율
4. 물건가격, 할부금융자금
5. 월 할부금의 금액, 지급횟수 및 시기
6. 채무자가 부담하는 이자율 등의 실제연간요율

### 제 4 조 (거래조건외의 주지 의무)

금융회사는 채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서면을 교부하기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동의가 있으면 팩스나 전자문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 2 조제 1 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보낼 수 있습니다.

1. 금융회사가 정하는 이자율, 연체이자율 및 각종 요율. 이 경우 각종 요율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지급하는 금액이 포함되도록 산정
2. 할부금의 변제방법

### 제 5 조 (할부금융의 신청 및 지급위탁계약)

채무자가 자동차구입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도인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에 할부금융을 신청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채무자를 대신하여 할부금융자금을 매도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니다.

### 제 6 조 (소유권행사의 제한)

채무자는 이 약정서 상 기재된 할부금의 원채시까지 금융회사의 승낙없이 당해 자동차를 양도, 대여 등의 임의 처분을 하거나 질권 또는 저당권설정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제 7 조 (초회납입 및 지연배상금)

- ① 채무자는 금융회사가 운영하는 결제일 중에 채무자가 선택하는 대출기일 이내에 도래하는 상환일을 초회납입일로 하며, 초회차 상환금액은 매월 납부해야 할 할부원금에 당해 대출일로부터 초회차 납입일까지의기간이자를 가산하여 납입합니다.
- ② 채무자가 월 할부금 등 금융회사에 지불하기로 한 금액을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기로 한 금액에 대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가 정하는 한도내에서 금융회사와 채무자간의 약정에 따라 정한 지연배상금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 ③ 할부금융 대출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여신거래기본약관 제 8 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때부터 할부금융자금 잔액에 대하여 제 2 항에 따른 지연배상금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산출하여 지급하기로 합니다.
- ④ 제 3 항에도 불구하고,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이라 함)의 적용대상 거래로서 원금(약정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이 5 천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연체가 발생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금융회사는 채무자와의 기존 약정에 따른 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아니하였다면 채무이행의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변제가 도래하더라도 이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제 8 조 (기한이익의 상실)

- ① 채무자에 대하여 여신거래기본약관 제 8 조(기한전의 채무변제외의무)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각 사유별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 또는 당해 채무를 즉시 상환하기로 합니다.
- ② 채무자가 제 1 항 이외에 제 6 조의 자동차의 양도, 대여 등 임의처분 행위를 한 경우 채무자는 당해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즉시 상실하여 이를 곧 갚아야 할 의무를 지며, 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 등의 행위를 한 경우 금융회사는 서면으로 설정의 해제를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0 일 이상이 경과하면 채무자는 당해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이를 곧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 제 9 조 (할부금의 기한도래 전 상환)

- ① 채무자는 할부금융 대출기간 중도에 잔여 할부금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도상환일 현재까지 아직 상환하지 않은 금액(당월 할부금, 연체금 등)을 모두 상환해야 합니다.
- ② 제 1 항의 경우 채무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가 정하는 한도 내에서 금융회사와 채무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를 별도로 납부하기로 합니다. 다만 제 8 조 에서 정한 기한이익상실 사유에 해당되어 금융회사가 기한전에 할부금융자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합니다.
- ③ 제 2 항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대출 사용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증가하여 서는 아니 됩니다.

### 제 10 조 (항변권)

- ① 채무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회사에게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매도인과의 자동차 할부매매 계약이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2. 매도인이 자동차를 약정한 인도 시기까지 채무자에게 인도하지 않는 경우
  3.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자동차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② 채무자가 제 1 항의 지급거절을 항변함에 있어서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그러한 취지를 통지하기로 하며, 금융 회사에 지급거절을 할 수 있는 금액은 지급기일이 지나지 않은 나머지 할부금에 한합니다.
- ③ 채무자는 제 2 항의 통지이전에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하기로 하며, 금융회사가 항변사유에 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채무자는 이에 적극 협력하기로 합니다.
- ④ 채무자가 상행위를 목적으로 자동차 할부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제 11 조 (비용의 부담)

- ① 채무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가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금융 회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1. 채무자의 요구에따라 발생하는 제증명·확인서 등의 소요비용
  2. 법령상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인정된 비용
- ② 인지세는 채무자와 금융회사가 각 50%씩 부담하기로 합니다.
- ③ 제 2 항에 의하여 채무자가 부담하기로 한 인지세를 금융회사가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여신거래기본약관 제 4 조에 준하여 갚기로 합니다.

### 제 12 조 (담보의 제공)

금융회사는 약정서상 채무자의 금융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별도의 담보를 제공할 것을 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무자는 금융회사가 제시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기로 합니다.

### 제 13 조 (유효기간)

이 약정의 효력은 당해 대출이 일어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채무자가 이 약정에 기명날인한 날에 발생 하며, 금융회사에 대한 이 약정에 따른 모든 의무가 전부이행 될 때까지 유효합니다.

### 제 14 조 (채권의 양도)

금융회사는 이 약정서상의 채권을 민법,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개인채무자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 3 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 제 15 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해석에 관하여는 금융회사의 여신거래기본약관을 따르기로 합니다.





# 여신전문금융회사 표준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금융감독원 약관 심사 일자 : 2026.04.03

###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이하 "금융회사"라 합니다.)와 이용자 사이의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거래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하고 거래당사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금융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제공하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비대면 자동화된 방식으로 직접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 "전자지급거래"라 함은 자금을 주는 자(이하 "지급인"이라 한다)가 금융회사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받는 자(이하 "수취인"이라 한다)에게 자금을 이동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를 말합니다.
- "이용자"라 함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금융회사의 체결한 계약하에 "전자금융거래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 "전자금융보조장치"라 함은 금융회사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를 보조하거나 그 일부를 대행하는 업무를 행하는 자 또는 결제중계시스템의 운영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 가.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업자의 신용카드 승인 및 결제 그 밖의 자금정산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자
  - 나.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은행업을 영위하는 자의 자금인출업무, 환입부 및 그 밖의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자
  - 다. 전자금융업무와 관련된 정보처리시스템을 해당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를 위하여 운영하는 사업자
  - 라. 기록부터 다목적의 사업자와 제휴, 위탁 또는 외부주둔(이하 "외부주둔"이라 한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자
- "전자적 장치"라 함은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자금입출금기, 컴퓨터, 전화기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를 말합니다.
-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처리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장비를 말합니다.
  - 가.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 나.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생성정보 또는 인증서
  - 다. 금융회사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 라. 이용자의 생체정보
  - 마. 기록 또는 기록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 "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전자지급매체,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신용카드, 전자서명 그 밖에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을 말합니다.
- "전자지급매체"라 함은 지급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금융회사에 개설된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전자적 장치에 의하여 자금을 이체하는 것을 말합니다.
- "거래지시"라 함은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계약에 따라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전자지급결제대행"이라 함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 "직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이용자와 가맹점 간에 전자적 방법에 따라 금융회사의 계좌에서 자금을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그 대가의 지급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에서 발행한 증표(자금을 통용받을 수 있는 증표를 제외합니다) 또는 그 증표와 관한 정보를 말합니다.
-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전자적 방법으로 변환되어 저장된 증표를 포함한다)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금융회사 외의 제 3 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전자화폐를 제외한다.
- "가맹점"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2 조제 5 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 2 조제 20 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 "오류"라 함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전자금융거래법 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 "추심"이라 함은 수취인의 전자적 장치를 통한 추심지시에 따라 금융회사가 지급인의 출금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다른 금융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 "영업일"이라 함은 금융회사의 영업장에서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날을 말합니다.

② 이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제 3 조 (적용되는 거래)

이 약관은 금융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다음 각 호의 전자금융거래에 적용됩니다.

-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자금용단말기에 의한 거래
- 컴퓨터에 의한 거래
- 전화기에 의한 거래
- 기타 전자적 장치에 의한 거래

### 제 4 조 (전자금융거래계약의 체결 및 해지)

①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금융회사와 별도의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결제대금, 송인내역 등 단순조회
-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자금용단말기에 의한 거래

② 전자금융거래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권을 가진 자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적 장치 등에 의하여 금융회사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제 5 조 (접근매체의 발급 및 통괄)

① 금융회사가 접근매체를 발급할 때에는 이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에 발급합니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는 접근매체의 갱신 또는 대체발급 등을 위해 이용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신청이나 본인확인 없는 때에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 16 조제 1 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전자화폐인 경우
-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정일전 6 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없는 접근매체에 대하여 이용자로써 갱신 또는 대체발급에 대한 서면 ("전자서명법" 제 2 조 제 3 호의 규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라 "공인전자서명"이라 한다)이 있는 전자문서 포함 동의를 얻은 경우
-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정일전 6 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있는 접근매체의 경우에는 그 예정일로부터 1 월 이전에 이용자 본인에게 발급 예정사실을 알린 경우 20 일 이내에 이용자로써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 제 6 조 (접근매체의 관리)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에 대하여 다른 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접근매체를 제 3 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는 행위
- 접근매체를 제 3 자에게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받는 행위
- 제 3 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누설, 노출, 방치하는 행위

### 제 7 조 (이용시간)

① 금융회사는 이용자에게 연중무휴 1 일 24시간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금융회사는 이용시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을 이용자가 접근하기 쉬운 전자적 장치 및 영업장을 통하여 변경 1개월 전부터 1개월간 알립니다.

### 제 8 조 (수수료)

①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이용자로써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금융회사는 수수료(금)를 객격에 확인할 수 있도록 영업점 및 이용자가 접근하기 쉬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게시하고, 수수료(금)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 25 조를 준용합니다.

### 제 9 조 (추심이체의 출금 등의)

- 금융회사는 추심이체를 실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라 미리 지급인으로부터 출금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금융회사가 지급인으로부터 서면(공인전자서명 또는 금융회사) 정한 기타 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이하 이 조에서 같습니다.이나 전화녹취(ARS 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출금신청을 받는 방법
  - 수취인인 지급인으로부터 서면이나 전화녹취(ARS 를 포함한다)에 의한 출금의 동의를 받아 금융회사에게 전달(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출금동의의 내역을 전송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하는 방법
- 지급인은 수취인의 거래지시에 따라 지급인의 계좌의 원장에 출금기록이 끝나기 전까지 금융회사에 출금동의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 2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량으로 처리하는 거래 또는 예외에 의한 추심이체거래의 경우에는 지급인은 출금일 전영업일까지 금융회사에 출금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제 10 조 (거래의 제한)

① 금융회사는 시스템의 유지보수, 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서비스 중단 예정사실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서면, 전화, 전자우편, 휴대문 메시지 등으로 30 일 전에 안내해야 합니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금융회사는 사전 안내 없이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자에게 서비스 중단 사실 통보를 즉시 안내해야 합니다.

- 긴급한 시스템 유지보수, 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
  - 통신장애, 정전 등이 발생한 경우
  - 서비스 이용 급증 등으로 서비스 제공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 해킹 등으로 금융회사 또는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인공지능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인공지능가 취소된 경우
  -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거부한 경우
  - 기타 이용자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
- ③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및 통신장애 등으로 거래지시가 이행되지 않아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회사가 배상하기로 합니다.

### 제 11 조 (전자지급거래의 보호)

①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의 효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때에 발생합니다.

- 전자지급이체의 경우 :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에 대하여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 계좌의 원장에 입금기록이 끝난 때
- 전자적 장치로부터 직접 현금을 출금하는 경우 : 수취인이 현금을 받은 때
-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로 지급하는 경우 :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한 때
- 그 밖의 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 : 거래지시 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난 때

② 금융회사는 이용자의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거래지시에 따라 지급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령한 자금을 이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 제 12 조 (거래지시의 철회 및 제한)

① 이용자는 제 11 조에 의하여 완료되지 전까지 전자금융거래시 이용한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또는 금융회사에 정하는 절차에 따라 거래지시를 철회 할 수 있습니다.

② 다음으로 처리하는 거래 또는 예외에 의한 거래이체 및 추심이체는 이체일 전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시 이용한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거래지시를 철회 할 수 있습니다.

③ 실시간 이체되는 거래 등 전자금융거래의 성질상 금융회사 거래의 원료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거래지시 철회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④ 이용자의 사망·파산·후견선고·피한정후견선고·피복정후견선고나 이용자 또는 금융회사의 해산·합병·파산은 그 자체로는 거래지시를 철회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 되지 아니하며 금융회사의 권한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 제 13 조 (오류의 정정 등)

①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을을 안 때에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금융회사는 전항의 규정에 따른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14 일 이내에 그 원인과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③ 금융회사가 스스로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하며, 오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4 일 이내에 오류의 원인과 처리 결과를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으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제 14 조 (사고시의 처리)

① 이용자는 접근매체의 도난·분실·위조 또는 변조의 사실을 알았거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 등에서의 사고 및 해킹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금융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② 제 1 항의 신고는 금융회사가 이를 접수한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하며 제 1 항의 신고를 철회할 경우에는 이용자 본인이 금융회사에 서면, 전화 등으로 신장하여야 합니다.

③ 금융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사고 사유를 지체 없이 조사하여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서면, 전화 등으로 14 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제 15 조 (손해배상 및 면책)

① 금융회사는 이용자로써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의 통지를 받은 후에 제 3 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②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제 1 항 제 1 호에 따른 금융회사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 제 2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합니다.
  -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 3 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알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전자금융거래법" 제 18 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를 알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 제 3 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 금융회사가 접근매체를 통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하는 것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시 사전에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제 2 항제 3 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 이용자가 제 3 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제 2 항제 3 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 가. 누설·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 나. 제 3 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알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 2 조 제 2 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합니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금융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장치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중보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③ 제 3 항에도 불구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회원, 직불카드(직불전자지급수단을 포함한다) 회원, 선불카드(선불전자지급수단을 포함한다) 회원 또는 이용자 대한 금융회사의 책임과 관련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는 등 다른 법령에 이용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우선 적용됩니다.

④ 금융회사는 이 조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 Mercedes-Benz Financial Services

## 제 16 조 (전자금융보조자 등의 지위)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전자금융보조업자 및 제 2 조 제 4 호 라목에 따른 제휴업체 등의 고의나 과실은 금융회사의 고의나 과실로 봅니다.

## 제 17 조 (거래기록의 보존)

①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거래기록(조회기록은 제외합니다.)을 5년간 유지, 보존하여야 합니다.

- 가. 거래의 종류 및 금액, 거래상대방을 나타내는 정보
  - 나. 거래일시,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다. 거래계획의 명칭 또는 번호
  - 라. 금융회사가 수취한 전자금융 관련 수수료
  - 마. 추심이체의 경우 이용자의 출금동의 내역
  - 바.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 사. 전자금융거래 신청, 조건변경에 관한 내용
  - 아.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 ②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거래기록 및 자료, 보존하여야 합니다.
- 가.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 나. 전자금융수단의 이용과 관련된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 다. 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 제 18 조 (거래기록 및 자료의 제공)

- ① 금융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융회사나 보존·관리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 관련 기록·자료를 14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 ② 이용자가 제공 요청을 할 수 있는 거래기록 및 자료의 범위와 대상기간은 제 17 조 제 1항 및 제 2항에서 정한 기록 및 기간으로 하며 제공 방법은 금융회사와 이용자 간 협의하여 정합니다.
- ③ 금융회사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거래기록 및 자료의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용자에게 확인 및 제공하여야 합니다.
  - 1. 전자적 장치를 통한 제공의 경우에는 즉시
  - 2. 서면 제공 방식의 경우에는 14일 이내

## 제 19 조 (통지방법 및 효력)

- ①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사항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신고한 최종 연락처로 전화, 서면, 전자우편을 이용하거나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기타 전자적 장치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서면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 ② 금융회사의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도달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거래의 처리결과 등 일반적인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했을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지났을 때 도달된 것으로 추정하며, 이용자가 제 20조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 제 20 조 (신고사항의 변경 등)

- ① 이용자가 주소(전자우편주소 포함합니다), 비밀번호, 상호, 전화번호 등 금융회사에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합니다.
- ② 신고사항의 변경은 금융회사가 제 1항의 신고를 접수하고 전산입력에 요구되는 합리적인 시간이 지난 후에 그 효력이 생깁니다.
- ③ 이용자는 제 1항에서 정한 신고사항 외의 각종 통지를 금융회사의 전자금융보조업자에게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자금융보조업자에게 한 통지는 금융회사에 한 것으로 봅니다.

## 제 21 조 (거래내용 녹음)

- ① 금융회사는 거래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직원과의 전화통화에 의한 거래내용을 녹음할 수 있습니다.
- ② 녹음된 내용은 해당거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의 증거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자는 금융회사에 녹음된 내용의 청취를 요구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 제 22 조 (비밀보장의무 등)

- ① 금융회사는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금융거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이용자의 인적사항 및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는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② 금융회사의 관리소홀로 인한 이용자 관련 정보 도난 및 유출시에는 금융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 ③ 금융회사는 관련 법령이 인정하는 경우 외에 소비자의 사전 동의 없이 광고를 게시 또는 전송하거나 이용자의 휴대문 및 컴퓨터 등 개인기기의 식별정보(예 : serial, Mac address, UUID 등)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 제 23 조 (약관의 명시·교부·설명)

- ① 금융회사는 이용자에게 약관을 명시하여야 하고,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식으로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 ② 금융회사는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 1. 약관의 중요내용을 이용자에게 직접 설명
  - 2.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고 이용자로부터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였다는 의사표시를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수령

## 제 24 조 (금융회사의 안정성 확보 의무)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의 종류별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

## 제 25 조 (약관의 변경)

- ① 금융회사가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 1 개월 전에 그 내용을 해당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 및 영업점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금융회사는 이용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 ② 제 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전자적 장치에 최소 1 개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서면, 전자우편 등으로 즉시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③ 금융회사가 제 1항 및 제 2항의 게시하거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내용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④ 이용자는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 제 26 조 (약관적용의 우선순위)

- ① 금융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 ②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③ 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선불카드 표준약관, 여신거래기본약관 등 관련 약관이 적용됩니다.

## 제 27 조 (이의제기 및 협조)

- ①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금융회사의 분쟁처리규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② 이용자가 금융회사의 분점이나 영업점 또는 금융회사의 분쟁처리규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금융회사는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③ 금융회사는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를 위한 분쟁처리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그 연락처를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 ④ 이용자는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와 관련한 금융회사의 사고조사 및 관계당국의 수사 또는 조사 절차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제 28 조 (재판관할)

이 약관에 타당한 거래에 관하여 금융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용자의 주소지 또는 금융회사의 거래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금융회사가 분점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리 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 받은 분점 또는 다른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 제 29 조 (준거법)

이 약관의 해석·적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합니다.





# 여신거래기본약관

여신금융협회 사후보고 접수일자 : 2024.10.24

이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 여신거래기본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 (이하 "금융회사"라 합니다.)와 거래처(이하 "채무자"라 합니다)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여신거래의 원활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마련된 것입니다. 금융회사는 이 약관을 모든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치·게시하고, 채무자는 이를 열람하거나 그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제 1 조 (적용범위)

- 이 약관은 금융회사와 채무자(리스이용자·할부금융이용자·차주·할인 신청인·지급보증신청인 등 금융회사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사이의 사실 대어(리스), 할부 금융, 대출, 팩드링, 어음할인, 지급보증, 외국환, 기타의 여신에 관한 모든 거래에 적용됩니다.
- 이 약관은 채무자가 발행·배서·인수한 보증한 어음(수표를 포함함)을, 이하 같습니다.)을 금융회사에 제 3 자와의 여신에 관한 거래에서 취득한 경우에 그 채무자의 이행에 관하여도 적용합니다. 다만, 제 2 조, 제 3 조, 제 5 조, 제 8 조, 제 12 조, 제 15 조 및 한, 제 18 조 제 1 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이 약관은 금융회사의 본·지점과 채무자(기업)의 경우 본·지점 통폐합의 제 1 항 및 제 2 항의 적용범위에 속하는 모든거래와 채무이행에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부속약관에 따르기로 합니다.

### 제 2 조 (어음채권 여신채권)

채무자가 발행하거나 배서·보증·인수한 어음에 의한 여신의 경우, 금융회사는 어음채권 또는 여신채권의 어느 것에 의하여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제 3 조 (리스차주 지면배상권)

- 리스차주·할부금·이자·할인료·보증료·수수료 등(이하 "이자 등"이라고 합니다.)의 용·계산방법·지급시기 및 방법에 관하여는, 채무자는 별첨이 허용되는 한도내에서 금융회사와 채무자간의 약정에 따르기로 합니다.
- 이자 등의 용은 거래계약에서 채무자가 다음의 각 호를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금융회사가 그 용을 변경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하는 것
  - 채무자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금융회사는 그 용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는 것
- 제 2 항 제 1 호를 선택한 경우에 채무이행완료 전인 국가정보지 등의 급격한 변동으로 계약 당시에 예상할 수 없는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긴 때에는 금융회사는 채무자에 대한 개별통지에 의하여 그 용을 인상·인하 할 수 있기로 합니다. 이 경우 원금에 이월해산된 때에는 금융회사는 지체없이 해산된 상황에 관한 통보도 변경하기로 합니다.
- 제 2 항 제 2 호를 선택한 경우에 이자 등의 용에 관한 금융회사의 인상·인하는 건전한 금융관행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이루어지기로 합니다.
-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곧 지급키로 한 금액에 대하여 별첨이 정하는 제한내에서 금융회사와 채무자 사이에 약정한 범위, 1 년을 365 일(윤년은 366 일)로 보고 1 일 단위로 계산한 원금에 대하여는 지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금리상승의 변화 그 밖의 상당한 사유로 인하여 채무자의 이행을 위하여 허용되는 한도내에서 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키로 하여져서는 국제은행·상관술 등에 따릅니다.
- 제 5 항에도 불구하고,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권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이라 합니다)의 적용대상 거래로서 원금(약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한도대출의 경우 한도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이 5 천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연체가 발생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금융회사는 채무자의 경우 당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아니하였던 채무이행의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아니하였던 채무자에게도 이에 대한 지면배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금융회사와 채무자간의 약정에 따라 이자 등과 지면배상금의 계산방법·지급의 시기 및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 그것이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내에서 그 밖의 여신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것일 때에는 변경후 최초로 이자를 납입하거나 한 날부터 그 변경된 사항이 적용됩니다.
- 제 4 항, 제 5 항 및 제 7 항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그 변경지점으로부터 1 개월간 모든 영업점 및 금융회사에 정하는 전자매체통지 등을 게시하기로 합니다. 다만, 특정채무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개별통지하기로 합니다.
- 제 3 항 및 제 7 항의 경우, 채무자는 변경 후 최초로 이자를 납입하기로 한 날부터 1 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지일까지는 변경전의 이율 등을 적용하기로 하고, 제 11 조에서 따른 기한전의 임의상환 수수료는 면제하기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그 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금융회사에 대한 반환배상금의 지체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지면배상금 등을 적용하기로 합니다.
- 제 5 항의 지면배상금율은 '대만 임의상환'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역경지율'에 '연체가산지율'을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 \* 역경지율이 없는 경우 <상법> 제 54 조에 따른 상사법정미율 또는 '한국은행법' 제 86 조에 따른 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가장 최근의 비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대출금리(신규구급액 기준) 중 상조금융 기가제대출금리> 중 높은 금리를 적용

### 제 4 조 (비용부담)

- 채무자는 채무부담 또는 기한이익 상실사유 발생에 따라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비용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 채무자·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에 대한 금융회사의 채무·담보권 등의 권리의 행사·보전(해지 포함)에 관한 비용
  - 담보목적물 조사·추진·서문에 관한 비용
  - 채무자의 지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
- 제 1 항에 의거 비용을 채무자가 지급하지 않아서 금융회사가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곧 이를 갈피며, 곧 갈피 아니하는 때에는 금융회사에서 대신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대신 지급한 날부터 2 달 이내로 채무자에게 상환할 수 있습니다. 54 조(상사법정미율)을(법원 6 판)내에서 약정금리, 1 년을 365 일(윤년은 366 일)로 보고 1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갈피기로 합니다.
- 금융회사는 여신약정서 채무자가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약정(자서)시(내)에의 경우 리스료(를) 발행), 기타내외대출 상환수수료 및 담보대출로 인하여 채무자가 부담하기로 한 부대비용의 항목과 금액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 제 4 조의 2 (청약의 철회)

- 청약의 철회와 관련하여서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46 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금융회사는 제 1 항에 따른 채무자가 청약 철회의 의사 표시를 명확하게 하지 않을 경우 청약 철회에 대해 설명하고 채무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처리합니다.

### 제 4 조의 3 (취급계약 해지)

① 채무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47 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 5 조 (지급의 용도 및 사용)

채무자는 여신신청서 사용의 용도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금융회사와의 여신거래로 받은 자금을 그 거래 당초에 정해진 용도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급보증 기타 금융회사로부터 받은 신용의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 제 6 조 (담보)

- 채무자 또는 보증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신용이 약화되거나 담보물의 가액 감소가 현저한 경우, 채무자 또는 보증인은 채권보전을 위한 금융회사와의 청구에 의하여 그 원상회복 및 담보의 보충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연대보증인은 제 7 조에서 규정한 연대보증인에 한합니다.
- 담보목적물의 처분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민권절차 절차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 금융회사는 담보목적물로서 적정행위에 응당하거나, 담보목적물을 매각하여 그 대금에서 제 16 조에 준하여 총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금융회사는 담보목적물의 평가액 또는 매각대금에서 그 채권액을 뺀 금액을 채무자 등에게 지급한다. "채무자" 등은 채무자, 설정자, 담보목적물의 제 3 취득자를 말합니다.
  - 목적물의 가치가 적어 많은 비용을 들여 경매하는 것이 불합리할 경우
  - 경매시 정당한 가격으로 경매되지 어려운 사항이 있는 경우
  - 공정사제가 있어서 경매에 의하지 않아도 공평하게 산출이 가능한 경우
  - 그 밖에 제 1 호 내지 제 3 호에 준하는 경우
- 채무자에게 제 6 조의 내용을 대해 별도로 설명하는 등 당해 금융회사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 조의 방식을 준수하고 채무자의 명시적인 사전통지를 받은 경우(제 2 항) 제 5 호에 따라 담보목적물의 처분이 이루어져 발생할 수 있는 채무자의 손실은 금융회사에 부담한다)
- 의결경매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채무자 등과 금융회사와 알고 있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그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1 개월 이내에 이해관계인이 금융회사에 금융회사·금융회사의 거래관계에 있는 경우 매매대금에 상한한 예상매각대금 금액으로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지 않아서 처분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담보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될 우려가 있거나 가치가 급속하게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금융회사와 채무자의 요청 정당한 담보목적물을 즉시 처분한 경우 금융회사가 그와 관련된 모든 분담과 책임을 부담합니다)
  - 담보권설정의 방법
  - 피담보채권의 금액
  - 담보목적물의 평가액 또는 예상매각대금
  - 담보목적물로서 직접 변제에 응당하거나 담보목적물을 매각하려는 이유
  - 금융회사의 거래관계에 있는 당해 매매대금의 정보
- 채무자는 담보에 관하여 목적물의 멸실, 훼손, 처분 기타 그 담보가치를 감소시켜 금융회사의 채권보전에 지장을 초래할 현상변경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채무자는 담보에 관하여 그 밖의 현상변경 행위를 하거나 제 3 자로서 취득한 권리의 설정 혹은 제 3 자로의 양도 등의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금융회사에 통지하기로 합니다.
- 채무자(기업에 한함)가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금융회사가 정유하고 있는 채무자의 동산·어음 기타의 유가증권(담보로서 제공된 것이 아닐지라도, 금융회사가 계속 보유하거나 제 2 항에 준하여 추진 또는 처분 등의 처리를 할 수 있기로 합니다).

### 제 7 조 (연대보증인)

- 금융회사는 채무자와 여신거래를 할 경우 연대보증인(명칭 또는 방식 여하를 불문하고 실질적으로 이와 유사한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을 포함합니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20 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외적으로 연대보증인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연대보증인은 채무자의 약정에 의하여 금융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하며, 그 이행에 관하여 이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 채무자가 금융회사의 동의없이 채무를 제 3 자로 하여금 인수 또는 승계하게 한 경우 채무자는 면제되지 않고 보증채무도 소멸하지 않습니다.
- 연대보증인은 일부 대위행위 등으로 말미암아 금융회사로부터 취득한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등 거래의 미비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의 보증이유가 있는 등(이는 금융회사에 있어서 이를 행사하지 않기로 하며, 금융회사와 동시에 그 권리를 행사할 경우에도 금융회사의 다음으로 변제하기로 합니다).

- 연대보증인이 채무자의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따로 보증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 보증은 이 보증 약정의 의하여 변동되지 아니하며, 따로 한 보증에 대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외에 이 약정에 의한 한도가 더해지는 것으로 한다.
- 연대보증인은 채무자의 일부보증 또는 채무자의 담보보증 등이 있는 경우 보증의 해지·해제, 보증액의 감소 등 요구할 수 있고 채무만도래 또는 기한연장 시점에서 다른 연대보증인으로의 대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동 요구에 따라 심사를 거쳐 30 일 이내에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에게 심사결과를 통지합니다.

### 제 8 조 (기한전의 채무변제요구)

-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당면한 금융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즉시 상실하여 지급보증거래에 있어서의 사전구상채무 발생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곧, 이를 갈피며 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유발생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는 사실을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 금융회사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도달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재산(제 1 항 제 1 호의 금융회사에 대한 채권에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도달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 파산, 회생, 개인회생 절차제시의 신청이 있거나, 채무회생자명부 등재 신청이 있는 때
  - 조세공과에 관하여 납기전 징수 처분을 받거나, 어음공과금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
  - 매입, 도매 기타의 사유로 자금을 정지한 것으로 인정된 때
  - 채무자의 과점주주나 실질적인 기업주인 포괄근보증인의 금융회사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제 1 호의 명령이나 통지가 도달된 때
  - 채무자가 관여한 총회기 위하여 외국에 이주하는 경우와 외국인과 결혼 및 연고 관계로 인하여 이주하는 때
  -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 채무자는 당면한 당해채무자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갈피며 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기한의 이익상실 3 영업일(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7 영업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 사유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당출전제 전부에 대하여 연가제 부과된 사실)을 채무자에게, 연대보증인, 담보제공자(단, 담보제공자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운송사업자인 경우에는 제외)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기한의 이익상실일 3 영업일(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7 영업일)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 실제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3 영업일(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7 영업일)이 경과한 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채무자는 곧 이를 갈피며 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제 3 호 6 항이 적용되는 경우 금융회사는 채무자에게 지면배상금이 제한된다는 사실 및 관련 금액을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 이자·등(원금보상할 또는 원리금보상할 형식의 리스료 및 할부금 제외)을 지급하기로 한 때부터 계속하여 기입된 경우에는 14 일간(지체한 때 기입이 없는 경우에는 30 일간)에 대한 추락담보대출의 경우 2 개월간 지체한 때
  -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 원리금의 지급금 2회(1회에 대한 추락담보대출의 경우 3회) 이상 연중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이 할부금까지 10 배의 수 초하 하는 요인이 충족한 때
  -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 채무자는 채권보전에 현저한 위약이 예상될 경우, 금융회사는 서면으로 변제, 압류 또는 해산, 신용의 회복 등을 독촉하고, 그 통지가 도달일부터 10 일 이상으로 금융회사가 정한 기한이 경과하면,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갈피며 할 의무를 진다.
  - 금융회사에 대한 수 개월 채무 중 하나라도 기한에 반채하지 아니하거나 제 2 항, 제 3 항 또는 제 4 항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를 통지하지 아니한 때
- 제 1 항 제 1 호 및 제 2 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체납처분이 있는 때
- 채무자의 제 1 항 제 1 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상의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개시가 있거나 채무자의 신용이 현저하게 약화되어 채권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때
- 제 5 조, 제 22 조에서 정한 약정을 위반하여 건전한 금융거래 유지가 어렵고 인정된 때
- 청산절차 개시, 결산회사의 합병, 노사분규에 따른 조업중단, 휴업, 관련기업의 도산, 회사경쟁에 영향을 미칠 법적분쟁 발생 등으로 현저하게 신용이 약화되었고 인정된 때
- 신용정보관리규약상 신용거래정보중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부도정보·관련연정보·금융지문정보, 공공기록정보등 등록된 때
-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허위, 위·변조 또는 그외로 부실사유로 발생한 사유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 때
-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 금융회사는 서면으로 독촉하고, 그 통지가 도달일부터 10 일 이상으로 금융회사가 정한 기한이 경과하면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대해 당해채무 전부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갈피며 할 의무를 진다.

- 제 6 조 제 1 항, 제 18 조에서 정한 약정을 이행하지 못한 때
- 리스료금이나 담보물에 대한 보충 기입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때, 금융회사를 해할 목적으로 담보물건을 양도하여 금융회사에 손해를 끼친 때, 추락지급대금을 받아 매입 또는 인출한 당해채무, 또는 사실상 채무를 받아 처분·관공된 기계·건물 등의 담보제공을 지체한 때, 기타 금융회사와의 개별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거래관계 유지가 어렵고 인정된 때
-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제 1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채무상환 기간 내에 보증인들을 교체 하지 않아야 할 때
- 개인채무자보호법 적용대상 거래이며 원금(약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한도대출의 경우 한도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이 3 천만원 미만으로서 제 2 항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금융회사는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 10 영업일 전까지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 10 영업일 전까지 채무자에게 도달한 경우에는 제외하며 기한이익이 부활된 채무에 대하여는 계속구제를 위한 연대보증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기한이익이 부활된 채무의 연대보증인에게 10 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부활통지를 하기로 합니다.
- 제 1 항 내지 제 6 항에 의하여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자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라도, 금융회사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분할상환금·분할상환원리금·이자·지면배상금의 수령 등 정상적인 거래의 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채무 또는 금융회사가 정하는 채무의 기한의 이익이 그때부터 부활합니다.

### 제 9 조 (기한이익의 상실의 연대보증인 및 담보제공자에 대한 통지)

- 제 8 조 제 1 항 각 호에 의하여 기한이익이 상실된 때, 금융회사는 어음공과금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기타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를 금융회사가 인지한 날로부터 각 15 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 및 담보제공자에게, 담보제공자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운송사업자인 경우에는 제외)에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기로 합니다.
- 제 8 조에 의하여 기한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당출전제 전부에 대하여 연가제 부과된 사실)을 채무자에게, 연대보증인, 담보제공자(단, 담보제공자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운송사업자인 경우에는 제외)에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기로 합니다.
- 제 1 항 및 제 2 항에 의하여 연대보증인에게 기한이익 상실을 통지한 경우라도, 제 8 조 제 7 항에 해당되어 기한이익이 부활된 채무에 대하여는 계속구제를 위한 연대보증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기한이익이 부활된 채무의 연대보증인에게 10 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부활통지를 하기로 합니다.
- 제 1 항 내지 제 3 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채무자보호법 적용대상 거래로서, 채무자에 대하여 제 8 조 제 5 항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경우 금융회사는 제 8 조 제 5 항 및 제 6 항에 따라 보증인에 대해서도 통지하여야 합니다.

### 제 10 조 (연대보증인을 위한 특별법 및 민법 등에 따른 보증인에 대한 통지)

- 이 조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및 민법에 따른 보증인에 대하여 적용된다.
- 금융회사는 보증인에게 철회할 때 보증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그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채무자의 채무관련 신용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경우에는 보증인에게 그 정보를 서면으로 재제외에 알려야 합니다. (보증계약에 경신할 때에도 이와 같습니다.)
- 금융회사는 채무자가 원금, 이자 그 밖의 채무를 1 개월 이상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채무자가 이행할 수 없음을 미리 안 경우에는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서면, 전화, 휴대문 문자메시지 중 한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서면으로 재제외에 알려야 합니다.
- 금융회사는 채무자의 청구가 있으면 주채무의 내용 및 그 이행 여부를 서면, 전화, 휴대문 문자메시지 중 한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보증인에게 재제외에 알려야 하며 채무자의 채무관련 신용정보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음을 금융회사가 알게 된 경우에도 보증인에게 서면, 전화 등으로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 보증계약 체결 후 금융회사의 승낙없이 채무자에 대하여 변제기를 연장하여 준 경우에는 금융회사는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개별통지하기로 합니다.

### 제 10 조의 2(할부거래발생 철회·환변권)

금융회사는 할부공과금 시 채무자가 할부철회·환변권이 적용되지 않는 거래를 할 경우에 채무자가 이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할부발생시 관련 서면(전자적) 정보 등을 이용한 통지를 포함한다. 및 휴대문 문자메시지로 철회·환변권이 배제된 경우를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 조에 따라 설명하고 안내하며 그에 관한 통지를 갖추어야 합니다.

### 제 11 조 (기한전의 이익 상실)

채무자는 약정한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전이라도, 미리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의 수수료 등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를 부담하기로 합니다. (단, 리스계약의 경우 부속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니다.)

### 제 12 조 (합의어음의 환대채무)

- 어음의 할인을 받은 채무자는 다음의 어음에 대하여 금융회사로부터의 독촉·통지 등이 없어도 당면한 어음된 기해금액에 의한 환대채무를 지고 곧 갈피로 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가 어음의 만기전에 환대채무를 이행하는 때에는 금융회사는 그 이행일부터 그 어음의 만일까지의 할인리율(상당금액을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 채무자에 관하여 제 8 조 제 1 항 제 8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합의 의뢰한 모든 어음
  - 어음을 발행 또는 인수한 자에 관하여 제 8 조 제 1 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하거나 채무자가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그 발행 또는 인수한 모든 어음
  - 어음의 할인을 받은 채무자는 다음의 어음에 대하여 금융회사가 서면으로 독촉하고 그 통지가 도달일부터 10 일 이상으로 금융회사가 정한 기한이 경과하면 어음의 환대채무를 지고 곧 갈피로 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가 어음의 만기전에 환대채무를 이행하는 때에는 금융회사는 그 이행일부터 만기일까지의 할인리율(상당금액을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 채무자에 관하여 제 8 조 제 3 항, 제 4 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합의의뢰한 모든 어음
    - 어음을 발행 또는 인수한 자에 관하여 제 8 조 제 3 항, 제 4 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 그 발행 또는 인수한 모든 어음
  - 제 1 항, 제 2 항에 의한 채무를 모두 갚을 때까지는, 금융회사가 어음소지인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제 1 항, 제 2 항의 경우에도, 제 8 조 제 7 항을 준용합니다.

### 제 13 조 (금융소비자보호의 상계 등)

기한의 도래 또는 제 8 조에 의한 기한전 채무변제요구, 제 12 조에 의한 합의어음의 환대채무의 발생 기타의 사유로, 금융회사에 대한 통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채무와 채무자의 금융회사에 대한 채권을 그 채권의 기한도래 여부에 불구하고, 금융회사는 서면통지에 의하여 상계할 수 있습니다.





# Mercedes-Benz Financial Services

② 제 1 항에 있어서와 같이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는 사전의 통지나 소정의 절차를 생략하고, 채무자를 대리하여 채무자의 금융회사에 대한 채권을 그 기한도래 여부에 불구하고 환급받아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대리환급 변제충당 후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채무자에게 통지합니다.

③ 제 1 항에 따라 채무자의 채무와 채무자 및 보증인의 금융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경우, 금융회사는 상계에 앞서 채무자 및 보증인의 금융회사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일시적인 지급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기로 하되, 채무자와 보증인의 금융회사에 대한 채권 등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채무자와 보증인에게 통지하기로 합니다.

④ 제 1 항에 의한 상계나 제 2 항에 의한 대리환급변제충당을 실행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보증인·담보제공자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 신속히 실행하기로 하며, 채권·채무의 이자 등과 지연배상금의 계산기간은, 금융회사의 상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날, 금융회사가 대리환급변제충당을 위한 개선을 하는 날까지로 하되, 그 둘은 금융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외국환시세는 금융회사가 계산실행 할 때의 시세에 의하기로 합니다.

## 제 14 조 (채무자로부터의 상계)

① 채무자는 채무자의 기한 도래한 채권과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를 그 채무의 기한도래 여부에 불구하고 상계할 수 있습니다.

② 만기전의 할인어음에 관하여 제 1 항에 의하여 상계를 할 경우, 채무자는 어음금액에서 환매일부터 만기일까지 할인료 상당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환매채무를 지고, 이를 상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회사가 타인에게 채무자의 할인어음에 관하여는 상계할 수 없습니다.

③ 제 1 항, 제 2 항의 약정에 불구하고, 외화에 대한 채권과 채무에 관하여는, 각기 기한 도래하고 또한 외국관에 관한 법령에 따른 소정절차를 밟은 때에 한하여 상계할 수 있습니다.

④ 제 1 항 내지 제 3 항에 의하여 상계를 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상계통지에 의하기로 합니다.

⑤ 제 1 항 내지 제 3 항에 의한 상계를 하는 경우 채권·채무의 이자, 할인료 등과 지연배상금의 계산기간은 상계통지가 도달한 날까지로 하고, 그 둘은 금융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르며, 외국환시세는 금융회사가 계산 실행할 때의 시세에 의합니다. 또한 기한전 변제에 관한 특별한 수수료 등의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 정함에 따라야 합니다.

## 제 15 조 (어음의 제시·교부)

① 어음이 따르는 거래에 있어서, 금융회사가 어음채권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 13 조에 의한 상계 또는 대리환급변제충당을 할 경우, 금융회사는 그 어음을 동시에 반환하지 아니하여도 되며, 어음의 반환장소는 그 거래영업점으로 합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어음을 찾아가도록 지체없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기로 합니다. 제 14 조에 의한 상계에 따른 어음의 처리도 같습니다.

② 금융회사가 어음채권에 의하여 제 13 조에 의한 상계 또는 대리환급변제충당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어음의 제시 또는 교부를 하지 않아도 되며, 이 경우의 어음의 처리도 제 1 항과 같습니다.

1. 금융회사가 채무자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2. 금융회사가 어음의 지급장소인 때
3. 교통·통신의 두절, 추심 기사의 사유로 제시 또는 교부의 생각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때

③ 제 13 조, 제 14 조에 의한 상계 등을 하고도, 곧 이행하기로 한 나머지 채무가 있을 경우, 어음에 채무자 이외의 어음상 채무자가 있는 때에는 금융회사는 그 어음을 계속 점유하고 추심 또는 처분할 후, 제 16 조에 준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④ 금융회사가 어음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지급정지를 할 경우에도, 어음의 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제 16 조 (금융회사의 변제 등 충당지정)

①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금융회사가 제 13 조에 의한 상계 또는 대리환급변제충당을 하는 경우에, 채무자의 채무 전액에 없애기에 부족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금융회사는 채무자에게 물리치지 않은 범위내에서 충당순서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② 변제 또는 상계될 채무가 수 개인 경우로서 채무전액이 변제 또는 상계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 실행경매에 의한 회수에 대하여는 민법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③ 변제 또는 상계될 채무가 수 개인 경우로서 제 2 항에 해당되지 않는 임의의 상환금 또는 각종 보증금 등으로 채무자의 채무전액을 없애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무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라 변제 또는 상계에 충당하기로 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른 경우 금융회사의 채권보전에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적담보나 보증의 유무, 그 경중이나 처분의 난이, 변제기의 장단, 할인어음의 결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회사는 지체없이 이의를 표시하고, 금융회사가 변제나 상계에 충당할 채무를 바꾸어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④ 금융회사가 변제충당순서를 제 3 항에 따라 민법 기타 법률이 정하는바와 달리할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채무자와 담보제공자 및 보증인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기로 합니다.

## 제 17 조 (채무자의 상계충당지정)

① 채무자가 제 14 조에 의하여 상계하는 경우, 채무자의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무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라 상계에 충당합니다.

② 채무자가 제 1 항의 상계충당지정을 아니하거나 제 1 항의 지정에 의하면 금융회사의 채권보전상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 16 조에 준하여 금융회사가 상계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기로 합니다.

## 제 18 조 (위험부담·면책조항)

① 채무자가 발행·배서·인수나 보증한 어음 또는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제출한 제 증명 등이 불가항력·사변·재해·수송도중의 사고 등 금융회사 자신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분실·손상·말실 또는 연착한 경우 채무자는 금융회사의 장부·전표 등의 기록에 의하여 채무를 갚기로 하되, 채무자가 금융회사의 장부·전표 등의 기록과 다른 자료를 제시할 경우 금융회사의 기록과 채무자가 제시하는 자료를 상호 대조하여 채무를 확정할 후 갚기로 합니다.

② 채무자는 제 1 항의 분실·손상·말실의 경우에 금융회사의 청구에 따라 곧 그에 대신할 어음이나 증서 등을 제출하기로 합니다. 다만, 금융회사가 제 3 자와의 거래에서 취득한 어음이나 증서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③ 제 1 항, 제 2 항에 의한 변제 또는 어음이나 증서의 제출로 인하여 채무자가 과실이 이중의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됨으로 말미암은 손해는 금융회사가 부담하기로 합니다.

④ 금융회사가 어음이나 제 증명 등의 인명·서명을 채무자가 미리 신고한 인감·서명과 상당한 주의로써 대조하고, 틀림없다고 인정하여 거래한 때에는, 어음·증서등과 도장·서명에 관하여 위조·변조·도용 등의 사고가 있더라도 이로 말미암은 손해는 채무자가 부담하며, 채무자는 어음 또는 증서 등의 기재문언에 따라 책임을 지기로 합니다.

## 제 19 조 (신고사항과 그 변경 등)

① 채무자 및 보증인은 거래에 필요한 각각의 명칭·성호·대표자·주소 등과 인감·서명을 금융회사에 정한 서면에 의하여, 미리 신고하기로 합니다. 또한 대리인에 의하여 거래하고자 할 경우, 그 성명·인감·서명 등에 관하여도 같습니다.

② 제 1 항에 의한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채무자 및 보증인은 각각의 정보를 지체없이 금융회사에 서면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음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변경사항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은 채무자 및 보증인이 지기로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금융회사는 채무자 및 보증인에게 손해 발생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합니다.

## 제 20 조 (자료의 생성·작성·의무)

채무자 및 보증인은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금융회사에 제출하는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제출하기로 합니다.

## 제 21 조 (통지의 효력)

① 금융회사가 채무자 및 보증인이 신고한 최종 주소로 서면통지 또는 기타 서류 등을 발송한 경우, 보통의 우송기일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② 채무자 및 보증인은 제 19 조 제 2 항에 의한 변경신고를 계속된 것으로 말미암아 제 1 항에 의하여 발송한 서면통지 또는 기타서류가 채무자 및 보증인에게 연락하거나 도달되지 않은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일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보며, 개인채무자보호법 적용대상 거래로서 원금(약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한도대출의 경우 한도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이 3천만원 미만인 채무자의 기한전의 채무변제 통지에 대해서는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③ 금융회사가 채무자 및 보증인에 대한 통지 등의 사본을 보존하고 또 그 발신의 사실 및 연월일을 장부 등에 명백히 기재한 때에는 발송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 제 22 조 (회보와 조사)

① 채무자는 그의 재산·부채현황·경영·업황 또는 유지조건에 이행 여부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금융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곧 회보하며, 금융회사가 필요에 따라 채무자의 장부·공장·사업장 기타의 조사를 하는 경우 협조하기로 합니다.

② 채무자는 그 재산·영업·업황 기타 거래관계에 영향을 미칠 사항에 관하여 중대한 변화가 생기거나 생길 염려가 있을 때에는, 금융회사의 요구가 없더라도 이를 곧 통지하기로 합니다.

③ 금융회사는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의한 회보 등이나 조사에 의하여, 채무자가 어음과관련한 거래정지처분, 부실여신의 보유, 경영상황의 급격한 악화 등으로 채권회수 불능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직권내 파견하여 채무자의 재산 및 경영에 관하여 채권보전을 위한 범위내에서 관리·감독할 수 있습니다.

## 제 23 조 (여신거래조건에 변경)

① 금융회사는 국가경제 및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으로 계약당시에 예상할 수 없는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긴 때에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단문메시지서비스(SMS) 중 2 가지이상의 방법으로 채무자에게 이를 알리고 여신한도, 여신기간, 금리 등 여신거래조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채무자는 제 1 항에 의하여 여신한도·여신기간의 거래조건이 변경된 경우 이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변경지침일로부터 1 개월 이내에, 금리의 경우는 변경후 최초로 이자를 납입하기로 한 날부터 1 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 11 조에 따른 기한전의 임의상환 수수료는 면제하고, 해지일까지는 변경전의 여신거래조건을 적용하기로 합니다.

③ 채무자는 신용상태가 호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융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신한도, 여신기간 등 여신거래조건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채무자 앞으로 곧 통지하기로 합니다.

## 제 23 조의 2 (금리인하요구권)

① 채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화, 서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채무자가 개인이 아닌 경우(개인사업자 포함) : 재무상태 개선,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금융회사는 채무자가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경우 자체 심사를 거쳐 10 영업일 이내(금리인하요구자에게 자료의 보증을 요구하는 경우, 그 보증을 요구한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에 채무자에게 금리인하 심사결과 등을 전화, 서면, 휴대폰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등 한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4. 금융회사는 금리인하요구자의 신용상태 개선이 금리 상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등을 고려하여 수용 여부를 판단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 금리인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계약결실시 채무자의 신용상태가 금리 상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
  2. 신용상태의 개선이 감미하여 금리 재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
5. 채무자는 금융회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채무자의 신용상태 변동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⑤ 금융회사는 제 1 항의 금리인하 요구권과 관련하여 금리인하요구 요건, 신청 및 통지절차 등을 마련하여 홈페이지, 상품설명서 등을 이용하여 알립니다.

## 제 23 조의 3 (채무조정 요청)

① 개인채무자보호법 적용대상 거래로서 원금(약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한도대출의 경우 한도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이 3천만원 미만인 채무자의 기한전의 채무변제 통지에 대해서는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채무자보호법 이외의 법률에서 채무조정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채무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제 24 조 (이행강소·준거법)

① 채무의 이행강소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거래영업점으로 합니다. 다만, 부실채권의 관리 등 상당한 사유로 채권관리업무를 금융회사에 분점·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이관한 경우에는, 이관 받은 분점·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을 그 이행강소로 합니다.

② 채무자가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아닌 경우라도, 이 약관에 타입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적용될 법률은 국내법을 적용합니다.

## 제 25 조 (약관·부속약관 변경)

① 금융회사가 이 약관이나 부속약관을 변경할 경우 변경약관 시행일 1 개월 이전까지 홈페이지에 변경내용(기존 채무자에 대한 변경약관의 적용여부, 신규조항 대비표 포함)을 게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을 즉시 게시합니다.

1. 법령 개정, 제도 개선, 약관 변경권고(명령) 등으로 긴급히 약관을 변경한 경우
2. 약관 개정이 채무자에게 유리한 경우
3. 변경 전 내용이 기존 채무자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4. 기존 약관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는 단순한 문구 변경인 경우

② 제 1 항의 약관변경 내용이 기존 채무자에게 적용되는 경우 제 1 항의 게시 외에 변경약관 시행일 1 개월 이전까지(제 1 항의 단서에 해당할 경우 약관 변경 즉시) 서면,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메시지 중 1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개별통지(신·구대비표 포함)하여야 합니다. 단, 제 1 항 3 호 또는 4 호에 해당하거나, 채무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개별통지를 하지 아니합니다.

③ 금융회사는 제 1 항의 게시 또는 제 2 항의 통지를 할 경우 "채무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제 1 항의 게시 또는 제 2 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게시 또는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채무자가 제 1 항의 게시 또는 제 2 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 제 26 조 (관할법원의 합의)

① 이 약관에 타입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금융회사와 채무자 또는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채무자의 주소지 또는 금융회사의 거래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금융회사가 분점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리 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 받은 분점 또는 다른 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② 할부거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채무자 또는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의 주소지를,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 또는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